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I-KOREA 4.0
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

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(경유)
제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, '19.6.13시행) 관련입니다.

3. **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**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**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**를 **임원급**으로 **지정**하여 **신고**하여야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신고대상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)
* 전기통신사업자 : 기간 · 부가 · 특수부가통신사업자

나. 신고기한 : 2020.3.31(수)
다. 신고방법 : (인터넷)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www.emsit.go.kr)
(우편 및 팩스) 지역별 전파관리소(붙임 참조)
라. 문 의 처 : (신고 및 접수관련) 지역별 전파관리소
(제외대상 관련) cybercq@korea.kr / 조성헌 주무관(044-202-6464)

붙임 :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지정 · 신고제도 안내 1부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

주무관 조성헌 전산사무관 윤승용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정재욱 전결 2020.1.21.

협조자

시행 사이버침해대응과-147 (2020. 1. 21.) 접수

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(어진동) / http://www.msit.go.kr

전화번호 044-202-6464 팩스번호 044-202-6037 / shjo7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생각은 창의적으로, 행정은 적극적으로!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제도 안내

1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[1] 지정·신고제도 및 대상

o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45조의3에 의거 **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**[2]는 **임원급**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('18.6.12.)

※ **임원급은 통상적 명칭과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**

o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의 기준을 기존의 종업원 수, 이용자 수 등에서 자산총액, 매출액 등으로 개정('19.6.13.)

※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>MSIT PR>간행물>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·신고제도 안내서 참조

2. 신고 의무 제외 대상

o 자본금 **1억원 이하**의 **부가통신사업자**(등록대상인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안됨)

o **소기업**[3] 중 상시 근로자 수*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**소상공인**
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: **5명 미만**)

* 상시 근로자 제외 인원은 "임원, 일용근로자,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"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

o 전기통신사업자,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, ISMS 인증 의무대상자*가 모두 아닌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**소기업**

*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

3. CISO의 자격 요건(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)

[일반자격요건]

o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**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**으로 **1년 이상 근무한 경력**이 있는 사람

o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[4]의 국내 또는 외국의 **석사학위 이상 학위**를 취득한 사람

o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**학사학위**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**3년 이상**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o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**전문학사학위**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**5년 이상**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o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**10년 이상**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o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**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**을 취득한 사람

1) CISO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란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**임원급의 최고책임자**를 지칭(CISO의 업무는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5조의3제4항 참고)

2) **전기통신(기간, 부가, 특수부가)사업자**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

3) 소기업 기준은 「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참고, **정보통신업종은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임**

4. 겸직 금지(대상조건에 미해당 사업자는 CISO의 겸직 가능)

[대상]

o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**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**인 자

o **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**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**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**인 자

[특별자격요건]

o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**4년 이상**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o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**합산한 기간이 5년**(그 중 **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**한 경력이어야 한다) 이상인 사람

* 3번의 CIS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상근하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.

6. 신고접수 문의처

o **온라인**(인터넷) :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**(www.emsit.go.kr)

*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> 전자민원신청 > 민원신청 > 신청인 정보입력 > 완료

o **오프라인**(우편 · FAX 등) : 지역별 전파관리소 [붙임1]

7. 신고의무 제외대상 관련 문의처

o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명자료

- **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기업재무제표** 각 1부.

o 소상공인 소명자료

- **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 1부.**

o 소기업 소명자료

- **중소기업(소기업)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 1부.**

※ 제출 및 문의

- 주 소 : (30121)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
- 이메일 : cybercq@korea.kr
- 담당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헌 주무관(044-202-6464)

8. 주의사항

o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**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,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**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6조 제1항 제6의2에 따라 **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4)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범위 및 관련 학과 · 경력 기준은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별표 1 참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[붙임1]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접수 문의처

기 관 명	전화번호	FAX	주 소	관할지역*
중앙전파관리소	02-3400-2336	02-3400-2329	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해외 등
서울전파관리소	02-2680-1749	02-2680-1758	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
부산전파관리소	051-974-5117	051-974-5129	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부산광역시 경상남도
광주전파관리소	061-330-6811	061-330-6829	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광주광역시 전라남도
강릉전파관리소	033-660-2815	033-660-2819	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강원도
대전전파관리소	042-520-4136	042-520-4190	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
대구전파관리소	053-749-2817	053-749-2929	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	대구광역시 경상북도
전주전파관리소	063-260-0102	063-260-0111	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전라북도
제주전파관리소	064-740-2812	064-740-282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제주특별자치도
청주전파관리소	043-261-5828	043-261-5839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	충청북도
울산전파관리소	052-231-8938	052-257-0939	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울산광역시

*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[붙임2]

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30일
신고인	상호명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사무소 소재지				
	대표자		전화번호		
정보보호 최고 책임자	성명		전화번호		
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
	직책/직급		겸직 여부 □ 전담 □ 겸직 (겸직업무:)		
	관련 업무 경력	정보보호: 년 개월, 정보기술: 년 개월 총 년 개월		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➡	접수	➡	검토	➡	신고완료
신고인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(예시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
신고인	상호명(법인명) *(예시)주식회사 전파관리소*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*123-45-67890(110111-1111111)*	
	사무소 소재지 *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-43, 2층*		
	대표자 *홍길동*	전화번호(보완요청시 연락가능한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) *02-0000-0000(담당자: OOO)*	
정보보호 최고 책임자	성명 *OOO*	전화번호 *02-0000-0000*	
	휴대전화번호 *010-0000-0000*	전자우편주소 *abcd1234@korea.kr*	
	직책/직급 *보안팀장/이사*	겸직 여부 □ 전담 ■ 겸직 (겸직업무: *IT보안 및 프로그램개발*)	
	관련 업무 경력	정보보호: *2* 년 *1* 개월, 정보기술: *3* 년 개월 총 *3* 년 개월	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.

2020 년 *0* 월 *00* 일

신고인(대표자) *주식회사 전파관리소* (서명 또는 인)

법인의 경우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구비서류 확인	수수료 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있어야 행정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대표자 생년월일: *50* 년 *1* 월 *1* 일

신고인 (법인은 직인,사용인감 必) *주식회사 전파관리소*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➡	접수	➡	검토	➡	신고완료
신고인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참고]

Q & A

질 의	답 변
○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(실제 영리 행위는 없음)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	○ 정보통신망법은 구체적 영리행위 존재유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- 따라서, 영리 목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	○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,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해외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	○ 법률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 필요 - 정보통신망법은 인적으로 내국인·내국법인 등에 적용되고, - 장소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적용
○ 소상공인임을 소명하는 방법은	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
○ 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일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	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여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, "영리목적" 여부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, SNS,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,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,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○ 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,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,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○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하는지?	○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

질 의	답 변
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으로 상근자를 규정하지 않음 - 이 경우 다른 기업 재직자나 해당 기업 비상근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	○ 정보통신망법령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으로 임원급의 지위와 학력·경력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, 다른 기업의 재직자나 해당 기업의 비상근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정 가능
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보보호 관련 학력·경력을 갖추도록 규정 - 이 경우 학위 취득 시기와 경력의 선·후 관계	○ 정보보호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되고, 선·후는 관계없음
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서식에 경력기간에 대한 기입란만 있는데, 학력이나 관련학과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	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하며, 신고 시 기입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○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정·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 허위일 경우 처벌 규정은?	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이 허위일 경우 시정명령(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)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,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(제76조제1항제12호)
○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- 이 경우 임원급의 구체적 범위	○ 정보통신망법에 임원급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제40조제1항) 상 임원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*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, 감사 등과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○ 임원급은 통상적 명칭과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, -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지는 임원급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
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방법	○ 상법 상 이사·감사 등 등기 임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 가능 ○ 비등기 임원의 경우, 직무·직위기술서, 조직도, 위임·전결규정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통해 소명 가능
○ 부장 직급자로 지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볼 수 있는지	○ 다른 임원과의 대등성, 지휘 관계, 직급 체계,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- "차장→부장→상무→전무→부사장→사장" 등의 진급 체계 내의 직위인 경우, 부장은 임원급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

질 의	답 변
○ 부사장·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가능 여부	○ 부사장·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
○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급이란?	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- 본부장·실장·처장 등이 임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
○ 1년 이상 근무한 사장·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	○ 사장·대표이사가 사장·대표이사로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소관 했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
○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SI업체 또는 보안업체가 기업집단의 개별 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개별 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	○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관계를 규율하지 않음 - 따라서, 개별 법인별로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어야 함 - 다만,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속회사에 임원급으로 소속되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
○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산정 방법	○ 전년도 10월~12월의 순 방문자수(UV)*의 일일 평균 * (Unique View) IP 기준 1일 방문자 수(동일 IP로 동일일에 수회 방문시 1명으로 산정)
○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의 산정 방법	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 판매, 광고, 콘텐츠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과 부가수익, 수수료 수입 등 관련 매출액의 총합
○ 인프라(서버, 네트워크) 운영·관리 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운영·관리하는 서버·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
○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자체 보안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은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, 일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
○ 보안서비스 사업이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서비스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, 다른 기업에 대한 보안서비스 사업은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
○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 분야의 경력에 해당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	○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 및 경력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 가능